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10. 18 선고 2024나1328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10. 18 선고 2024나13287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5. 17 선고 2023가단892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다훈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강, 담당변호사 김정욱

변론 종결 2024. 8. 30.

판결 선고 2024. 10. 18.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5. 17. 선고 2023가단8923 판결

주문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13,062,003원, 원고 B에게 85,691,1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근거한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면 9행의 "계약구"을 "계양구"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현우

판사이도식

판사최은경